

고등교육법에 의한 군사학교육 발전방안¹⁾

진석용*

목 차

1. 머리말
2. 군사학 학위의 제정
3. 군사학의 특수성
4. 대학의 군사학 교과 편성기준
5. 각 대학의 군사학과 교과운영 현황
6. 군사학 발전을 위한 과제

1. 머리말

작년(2004년)에 대전대학교 학부과정에 군사학과가 신설되고, 올해 원광대학교 · 조선대학교 · 경남대학교²⁾에 추가로 군사학과가 설치되면서 바야흐로 군사학의 대학교육 시대를 맞고 있다

군사학의 ‘대학 진입’은 영관급 이상 장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대전대학교가 경영행정사회복지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전대 군사연구원 연구Ⅲ부장

1) 이 글의 일부 내용은 2005년 7월 8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민·관·군 교육전문가 초청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 워크숍>에서 발표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과운영현황 및 군사학 교과편성을 위한 기준 제안」에 실린 것이다
2) 경남대에 군사학전공이 개설된 것은 2004년이지만 올해 육군의 인가를 받았다

대학원에 군사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충남대학교는 평화안보대학원에 평화안보학과, 군사학과, 최고위 평화안보정책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한남대학교도 행정정책대학원 내에 안보국방정책학과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군사학 관련학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양대학교는 작년에 60명 정원의 경영학부 내에 군수학 전공을 신설하였고, 대덕대학은 총포광학, 유도탄약, 특수무기, 국방물자과 등 4개 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신성대학은 올해 해병대 부사관을 양성하는 ‘전문사관과’를 개설하였고, 혜천대학은 내년부터 부사관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군사학은 군인들의 전유물이었고, 또한 군인들의 전쟁기예(戰爭技藝 military art)로 취급되어 왔으나, 대학에 군사학과가 설치됨으로써 군사학은 대학교에서 교수 및 연구되는 학문분야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20여 년 전부터 군사학의 학문체계 정립과 군사학 학위제정 계획을 추진해왔던 군 교육기관과 육군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 군사학에 대한 민간 교육기관들의 관심에 부응하듯,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서도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군사학이 크게 ‘부흥(復興)’할 수도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놓기도 한다.

그러나 군사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의 관점과 군의 관점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학과의 운영과정상 군과 대학의 이견(異見)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i) 그간의 군사학 학위제정 경과와 (ii) 군사학 교과편성기준 (iii) 고등교육법에 의해 군사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교과운영 현황

3) 육군본부 개인교육과, “군사학 학위제정 계획” (2002 3 26)

등을 살펴본 다음, (iv) 군사학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군사학 학위의 제정

200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생교육법」 제4조⁴⁾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⁵⁾에 따라 이른바 “학점은행제”를 인정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사학 학위 수여의 기준이 될 「표준교육과정」을 3개 전공(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으로 나누어 공시하였다.

학점인정 대상학교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외에, 육군의 경우 11개 병과학교⁶⁾가 학점인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2003년 초군반 입교자부터 누적학점을 인정하여 이들이 고군반을 수료하는 2005년도에 최초로 군사학 학위가 수여된다. 이 학위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1항⁷⁾의 규정에 의해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⁸⁾에 의한 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 「평생교육법」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제28조 (학점등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11개 병과학교 육군공병학교, 육군기계화학교, 육군방공학교, 육군보병학교, 육군정보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통신학교, 육군포병학교, 육군항공학교, 육군화학학교

7)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 (學力認定)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1.3.28>

각 전공별 필수과목 및 학위수여 요건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군사학 전공별 필수과목 및 학위수여 요건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전공 필수 (각 3 학점)	공통	북한군전술, 전술학입문, 전투지휘학, 지휘관리학		
	전공별 필수	군사행정학 정신전력개론	전투병과전술학 지휘관 및 참모업무	정신전력개론 지휘관 및 참모업무
	과목/학점	6 과목 18 학점		
전공선택 개설과목수		34과목	35과목	82과목
학위 수여 요건	단일전공	총 140학점 이상 전필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복수전공	전공 35학점 이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施行規則 제9조)		
학점인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분의 8 이상 출석 •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7 이상 (즉 C0 이상)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05학점 		
비 고		위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점인정서, 학력인정증명서, 학위증 등을 교부한다		

- 8)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① 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처럼,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군사학사도 학위의 종류에 포함되고, 2004년 대전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신설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군사학사 학위가 수여됨에 따라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의해 이·문·공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던 사관학교들도 군사학사 학위를 수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삼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서도 군사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⁹⁾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군 내에는 세 종류의 군사학사, 즉 ①「평생교육법」에 의한 군사학사(고군반 수료자 등), ②「사관학교설치법」 등에 의한 군사학사(삼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군사학사(대학 군사학과 졸업생)가 혼재하게 된다.¹⁰⁾

9) 「사관학교설치법」 제8조 (학위수여<개정 2004.1.20>) ①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9조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개정 2004.9.9>)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7조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개정 2004.9.9>)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을 미리 고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학위수여요건에 따르면, “법,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제50조제1항 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에 한한다”(제1항제3호)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 이미 군사학사 학위를 받은 대학 졸업생이 초군 및 고군반의 수업을 수료하더라도 따로 또 군사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으며, 받을 필요도 없다

3. 군사학의 특수성

군사학은 학문 수요자(소비자, 혹은 수혜자), 연구 대상, 연구 목적, 적용 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학문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실용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군사학의 ‘학문성’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게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실용적 성격 때문이다. 다음에서 군사학이 지닌 특수한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학문 수요자의 특수성

모든 지식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질, 즉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적용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분야의 지식들은 보통 누구에게나 가치를 발휘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흔히 보편적인 진리라고 한다. 학문이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혹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진리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의학상의 진리들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적용되고, 농학의 진리 역시 물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에 적용된다. 기후의 변화와 관련된 기상학적 진리는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적 진리는 태양계는 물론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학 분야의 지식은 오로지 군인에게만 필요한 지식이다.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군인을 통해서 생기는 우회적 혜택이지 군사학적 지식이 시민 개개인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군사학적 지식을 가지라고 촉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평범한 시민이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는 별로 없다.

(2) 연구 대상의 특수성

군사학 분야의 지식은 오로지 전쟁과 관련하여서만 필요한 지식이다 전쟁이라는 현상은 우리 삶의 일상적 환경이 아니다 의식주의 해결, 성욕의 해결 등과 같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는 달리 전쟁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익을 주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관심사와 직결시키기가 어렵다.¹¹⁾

(3) 연구 목적의 특수성

일반 학문의 경우 학자들이 하는 일은 진리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된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게 된다 어떤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일은 학자의 뜻이고, 그 물을 먹을까 말까는 마시는 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뜻이다 즉 진리 자체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기는 실용성의 문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리학자가 발견한 부력의 원리는 평생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지만, 배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매우 긴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학의 경우에는 군사학적 진리의 발견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승전(勝戰)’이 목적이다¹²⁾ 즉 군사문제는 이론이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결과가 중요하다 이론이나 과정은 지적(知

11) 단 이스라엘처럼 전쟁기운이 항존(恒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사학적 지식이 일상생활에서도 긴요한 것이 될 수 있다

12) 여기에서 ‘승전’보다는 ‘전쟁억제’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억제가 비군사적 수단으로 얻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군사학의 연구대상이 아닐 것이고, 군사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승전’의 능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학의 내용은 ‘승전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억제’는 ‘승전 법’의 최선의 활용형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不戰而屈人之兵)’도 ‘싸움법’의 일종이다

的) 대상이지만 실천과 결과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능력이나 숙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영을 잘 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했다고 해서 그 연구자가 곧바로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한다. 그 이론에 따라 팔 다리를 움직이는 숙달훈련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중력(重力)의 법칙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숙달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즉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사학의 학문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양병(養兵) 문제는 이론적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들(위협요소, 이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등)이 대체로 확실한 형태로 주어지지만, 전쟁시 용병(用兵)의 문제는, 불확실성과 우연적 요소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론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를 미리 연구해 놓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 현장 전투지휘자의 직관이나 지략, 용맹 등에 의존한다

(4) 진리적용의 대상 제한성

군사학적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전법(勝戰法)을 의미한다면, 이 승전법은 교전 당사자 쌍방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다 즉 승리는 어느 일방이 얻는 것이지 쌍방이 동시에 승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제로섬(zerosum)의 상황은 ‘보편적인 진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5) 진리적용의 상대성

전쟁이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아래서 둘(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총력(總力)으로 맞붙는 일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학적 일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의 전쟁 승리 방법이고, 따라서 각국의 국방정책(방위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군사학이 보편적 군사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방위학 혹

은 국방학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군사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¹³⁾ 자연과학적 지식은 국경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성에 관한 진리)도 대체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그러나 방위 문제는 방위대상과 위협요소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6) 진리적용의 조건성(條件性), 혹은 비밀성(秘密性)

군문(軍門)에서 ‘기만(欺瞞)’은 하나의 정당한 수단으로, 군사학적 ‘진리’로 인정되고 있다 ‘기만’, ‘기습’ 등과 같은 일이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는 영역은 오로지 군사 영역뿐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군의 전략전술은, 적이 알고 나면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적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실용성이 있는 군사학은 기밀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어떤 문제에 대한 연구를 기밀로 하면서 ‘학문’으로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수성들로 인하여 군사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세한 논의를 이 글에서 할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만 지적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첫째, 모든 군사문제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군사현상 중 일부는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학문과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연구하면 체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검술이론가와 검객은 다르지만 검술이론가가 있을 때 훌륭한 검객이 출현할 수 있다 둘째, 군사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학적 지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군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13) 군사학, 국방학(방위학)이란 용어의 원래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자국 군대의 이름을 ‘방위군’, 혹은 ‘자위군’으로 불여놓고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군사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다.

4. 대학의 군사학 교과 편성기준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교양과 전공의 비율, 이론과 실기(실무능력)의 비율, 필수와 선택의 비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각 요소마다 옹호와 반대의 명분이 백중하여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전공과 실무능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전공필수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 분야의 단일전공보다는 복수전공을 권장하기 위해 전공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점점 줄이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전인교육과 다양한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고, 사회에서는 대학졸업자의 실무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대학교수들은 대학을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고 항변한다.

수학(修學)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위와, 특정 직업분야의 실무능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정치학박사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경영학박사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학 박사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과학과 기술의 차이, 과학자와 기술자의 차이, 원리와 응용의 차이, 이론가와 실천가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학문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으로서의 학문’은 일반적으로 원리나 진리 탐구에 중점을 두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학사(學士) · 석사(碩士) · 박사(博士) 등 학위를 수여하며, 이를 인간의

일상생활에 실용(實用)하는 일은 기술 또는 응용의 영역에 맡겨두고, 일정한 수준까지 숙련된 사람에게는 기능사(技能士)·기능장(技能長)·기사(技士) 등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기술은 그 혜택이 직접적 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을 익힌 숙련자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학문은 실용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 성취가 널리 공유될 수 있고 수혜(受惠)의 범위가 매우 넓다. 베이컨(F Bacon)이 말한 것처럼,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탁월한 행동으로서 그 혜택은 실로 인류전체에게 미친다” 원리나 원칙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원칙의 응용 또는 적용은 보통 시간문제에 속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정한 군사학 표준교육과정(부록 참조)은 각 전공별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들로 편성되어 있으나, 대학의 군사학과들은 대체로 ‘학문으로서의 군사학’ 또는 ‘군사학의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지원 동기는 군사학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직업장교가 되기 위해서이며, 또한 ‘졸업후 장교 임관’이 대학의 군사학과 개설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자질은 일정 수준의 군사학 지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중대급 이하에서 장비하고 있는 화기 및 장비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중대규모 이하의 병력을 지휘 통솔하여 전술적 차원의 전투를 수행하는 능력 등일 것이다. 미국 각 대학의 ROTC 프로그램이 “리더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육군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 등에서 군대윤리와 지휘론, 전술학 등을 “군사학”的 주요과목으로 편성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만일 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이 이러한 자질을 계발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된다면, 이는 ‘군사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초급장교 훈

련프로그램이 되고 말 것이며, 각 대학의 현실적인 여건(군사훈련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육군사관학교나 제3사관학교가 배출하고 있는 장교에 필적할 만한 장교를 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군사학과의 교육과정은 ‘학문성’과 ‘실용성’을 어느 정도 절충하되 ‘학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대학의 군사학과 졸업생은 졸업(학사학위 수여)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학사장교 훈련프로그램에 합류하여 1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장교로 임관되거나, 혹은 ROTC로 선발된 경우 재학 중 군사훈련을 따로 받게 된다 즉 군사훈련 부분은 현행 ROTC나 학사장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5. 각 대학의 군사학과 교과운영 현황

5.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과의 정원, 선발 방법 및 학위의 수여

(1) 대학의 정원에 관한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동 제28조 (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 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2) 선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의 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동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

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동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학위의 수여에 관한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①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일부 생략> ⑤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5.2 각 대학 군사학과의 전형방법과 교육과정

(1) 전형방법

선발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여학생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 군사학과가 장교 양성기관이라면, 일정

한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군사학 교육기관이라면 ‘성별’을 이유로 차이를 둘 수는 없다.

<표 2> 대학별 군사학과 신입생 전형방법

	정원	선발기준과 방법	
대전대	60 (여10포함)	① 1차선발	수능 100%
		② 2차선발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합부만 판정)
		③ 최종선발	수능성적(80%)+체력검정(10%)+면접(10%)
경남대	40 (여10포함)	① 1차선발	수능 100%
		② 2차선발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합부만 판정) 체력검정, 면접평가(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선발 점수로 반영)
		③ 최종선발	수능성적(80%)+체력검정(10%)+면접(10%)
원광대	40	① 1차선발	수능 100%
		② 2차선발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합부만 판정)
		③ 최종선발	수능성적(80%)+체력검정(10%)+면접(10%)
조선대	40	① 1차선발	수능 100%
		② 2차선발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합부만 판정) 체력검정, 면접평가는 합부 및 등급별 배점 에 따른 취득점수를 최종선발에서 반영
		③ 최종선발	수능성적(80%)+체력검정(10%)+면접(10%)

둘째, 장교임관의 목적 외에 순수 군사학연구를 위해 군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군 장학금은 기대할 수 없지만, 본인이 자비 부담으로 수학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등에서는 정원의 확정과 선발기준에 관해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교육평등권, 공정한 경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교육과정표

1) 대전대학교

(*표는 전공필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1-1	군사학개론*	3	1-2	군사사상*	3
	국방조직론	3		국가안보정책론	3
	병영체험(1)	2		극기훈련	1
	체력단련생활지도(1)	1		체력단련생활지도(2)	1
2-1	군사이론*	3	2-2	세계전쟁사*	3
	북한군사론	2		국방정책론	3
	군사영어(1)	2		군사영어(2)	2
	병영체험(2)	2		전략론	2
	전쟁론	2		군사과학기술	2
	국방기획관리	2		군사지리학	2
	북한학연구	2		체력단련생활지도(4)	1
	체력단련생활지도(3)	1			
3-1	군사사*	3	3-2	한국전쟁사	3
	무기체계연구	3		군사제도사	2
	초급지휘론	2		민군관계론	2
	군대윤리	2		국제사회론	2
	병서강독	2		전자정보전	2
	군사경제학	2		무기발달사	2
	체력단련생활지도(5)	1		체력단련생활지도(6)	1
4-1	직업군인론	3	4-2	고급지휘론	2
	군사학방법론	2		미래전쟁	2
	군사학특강	2		군사학세미나	2
	세계군사정세	2		위기임	2
	위기관리론	2		군사사회학	2
	체력단련생활지도(7)	1		체력단련생활지도(8)	1

* 일반학생 중 군장학생 및 학군/학사후보생을 위한 안보학 강좌 개설

- 매 학년도 1학기 국가안보론, 전쟁사
- 매 학년도 2학기 리더십, 무기체계론, 북한학

2) 경남대학교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1-1	군사학개론	3	1-2	국가안보론	3
	전쟁과문명	2		군사과학기술의이해	2
	병영체험 I	3		체력육성법	2
2-1	병영체험 II	3	2-2	무도초급 II	2
	무도초급 I	2		문서작성과프리젠테이션	2
	전쟁론	2		북한학	2
	전쟁사	3		한민족전쟁사	3
	국제관계론	2		동양군사사상	2
	지휘통솔론	3		한국군제사	2
	무기체계론	3		군사영어 II	3
	군사영어 I	3			
3-1	무도중급 I	2	3-2	무도중급 II	2
	한국군사사	2		민군관계론	2
	군대사회학	2		군사지리학	2
	서양군사사상	2		전략론	3
	한국전쟁사	2		작전법	2
	군사제도론	2		북한의군사	2
	군사영어 III	3		남북한관계론	2
4-1	군사법	3	4-2	국방기획관리	2
	국방경제론	2		군비통제론	2
	현대무기체계	2		전쟁연습	2
	현대전연구	3		군대윤리론	2

※ 일반학생 중 군장학생 및 학군/학사후보생을 위한 안보학 강좌 개설

3) 원광대학교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1-1	군사학개론	3	1-2	군사사상	3
	한국군대와사회	3		군대윤리	3
	병영체험1	2		체력단련2	0
	체력단련1	0			
2-1	군사이론	3	2-2	한국전쟁사	3
	군사기상및지형학	3		국제분쟁론	3
	군사영어1	2		군사제도사	3
	전자정보전	3		군사영어2	2
	군대사회학	3		체력단련4	0
	병영체험2	2			
	체력단련3	0			
3-1	군사학1	2	3-2	군사학2	2
	군사사	3		국방정책론	3
	국가안보론	3		북한학	3
	국방경제학	3		민군관계론	3
	세계전쟁사	3		미래전쟁연구	3
	체력단련5	0		체력단련6	0
4-1	군사학3	2	4-2	군사학4	2
	전쟁론	3		전략론	3
	지휘통솔론	3		무기체계론	3
	직업군인론	3		군사교육학	3
	국제관계론	3		전장심리	3
	군사과학기술의이해	2		체력단련8	0
	체력단련7	0			

※ 일반학생 중 군장학생 및 학군/학사후보생을 위한 안보학 강좌 개설
군사과학기술의 이해 (2학점), 전쟁과 문화 (2학점)

4) 조선대학교

(*표는 전공필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학년-학기	교과목명	학점수
1-1	군사학개론*	3	1-2	군사사상*	3
	국군조직론	3		국가안보론	3
	체력단련/생활지도	1		무기체계	3
	병영체험	2		체력단련/생활지도	1
	태권도1	2		태권도2	2
2-1	군사이론*	3	2-2	세계전쟁사*	3
	전쟁사	2		직업군인론	3
	군사영어1	2		군사영어2	2
	한국군리더십	2		군사학방법론	2
	북한학	2		군사지리학	2
	군대윤리	2		군사제도사	2
	체력단련/생활지도	1		체력단련/생활지도	1
	병영체험	2			
3-1	군사사*	3	3-2	고급지휘론	2
	민군관계론	2		전쟁론	2
	군사과학기술	2		위기관리론	2
	전략론	2		국제사회론	2
	세계군사정세	2		군사사회학	2
	북한군사론	2		군사경제학	2
	병서강독	2		군사교육학	2
	체력단련/생활지도	1		체력단련/생활지도	1
4-1	국방정책론	3	4-2	무기발달사	3
	군사학특강	2		전자정보론	2
	군사학세미나	2		미래전쟁	2
	전쟁연습	3		국방기획관리	2
	체력단련/생활지도	1		체력단련/생활지도	1

※ 일반학생 중 군장학생 및 학군/학사후보생을 위한 안보학 강좌 개설

- 매 학년도 1학기 전쟁사, 한국군, 리더십, 북한군사학
- 매 학년도 2학기 국가안보론, 무기체계

5.3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

대학의 군사학과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 1) 대전대학교의 「학칙」 제44조의 2¹⁴⁾에 의거,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을 받아 군사학과의 과목을 이수케 한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¹⁵⁾의 규정에 의해 대전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 2) 학과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학점인정기관(현재 육군 11개 기관)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105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입생은 반드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 3)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을 받아 군사학과의 과목을 이수케 한 후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점간의 상호인정, 즉 합산에 관하여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과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는 학위수여기관(85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 혹은 주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군사학이라 하더라도 대전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
- 14) 대전대학교 학칙 제44조의 2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학위수여요건)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 84학점이상

•

기타 학점인정기관들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나 체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인정 및 누적을 통하여 기준학점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내용상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6. 군사학 발전을 위한 과제

대학에 군사학과가 설치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의 군사학과가 ‘학문으로서의 군사학’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를 연구·교육할 경우, 기존의 군교육기관에서 양성해온 장교와는 스타일이 다른 장교가 배출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군사학 발전을 위한 민간기지(民間基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군사학과가 민간의 군사학 연구 인력을 개발 및 확보하여 군사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첫째, 군과 대학이 군사학과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군은, 군사학과가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군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설치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대학에 의한 장교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대학에서는 이를 “새로운 전공영역”的 개발과 이로 인한 “정원확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군사학과의 운영에 관한 군과 대학의 협의과정에서 종종 의견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둘째, 군사학과를 설치한 대학마다 사정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신설학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군에서는 대학이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가지고 군사학과를 운영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대학에

서는 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사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이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인 점에 비추어, 군과 대학 어느 쪽으로부터도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군사학 열풍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셋째, 대학에 군사학 관련 과목이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군사학과 교수요원이나, '안보학 강좌' 교수요원이 전부 군에서 공급될 경우, 군사학 교육 내용이 기존의 군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차이가 없어져, 대학에 군사학과를 설치한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군사학'은 대학 내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군사학의 '대학 진입'은 우리나라 군사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의 교련 교육이 대학에 심어주었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일소되고 있고, 현재 각 대학에서 군사학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과목이 되고 있다. '군풍(軍風)'으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군과 대학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한국의 군사학은 크게 부흥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학문으로서의 군사학”을 제창하고 군사학의 연구 및 교육분야를 논의한 주요문건들은 다음과 같다

1978. 이재호, “자주국방을 위한 전문교육의 일고,” 『육사신보』, 1978년 1월호.
- 1979 육군본부, 『1980년대 육군정책 제3집 간부정예화 방안』 육군정책 연구서.
1980. 국방대학원, “군사학 이론과 교육체계 정립” 『국방학술세미나 논문집』.
- 1983 육군본부, 『군사이론 대국화 추진방향』 .
- 1984 白鍾天, “국가안보, 국가방위 및 군사연구 - 대상과 시각.” 『국제정치논총』
- 1992 국방대학원,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안” 국방대학원 안보학술세미나.
1999.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및 교육체계” ‘99 군사연구세미나 I
- 2002 육군본부 개인교육과, “군사학 학위 제정 계획.” 내부보고자료 (2002. 3. 26.)
- 2002 한명덕, “군사학문체계 소요 검토” 『3사교 논문집』 제55집 (2002 11)
2003. 제168학군단, “군사전문교육”
- 2003 장용선, “한국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대전대학교 군사학학술대회(2003 6 5)
- 2005 정성, “군사학의 기원과 이론체계” 『군사논단』 제41호(2005년 봄호)

(2) 기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국내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자료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

제3사관학교 교육과정

국방대학교 교육과정

金弘, 『韓國의 軍制史』 (서울: 學研文化社, 2003)

閔晟基, 『한국 방위산업』 (서울: 문원, 1996)

朴輝洛, 『現代軍事研究』 (서울: 법문사, 1998)

육군제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학교 교육발전 방향』. 2002년 충성대 교육발전 세미나 (2002. 10. 3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軍事研究叢書 第33集(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
2000.12)

윤정원, “미래전장의 지상전력 능력 소요검토 및 구현방책” 한국전략문체연구소 세미나 (2001. 11.)

윤정원 외 공저,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2)

趙甲濟, 『軍隊. 종합가이드북』 (서울: 月刊朝鮮社, 2002)

조규필, “미래 지상전장운영개념의 발전방향.” 한국전략문체연구소 세미나 (2002. 6.)

조승옥 · 장용선 · 이택호 · 박연수 · 이민수 · 김동식 공저, 『군대윤리』 (서울: 봉명, 2003)

최석철 편저, 『무기체계@현대 · 미래전』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최윤대 · 문장렬,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서울: 良書閣, 2003)

황치복, “21세기 지상군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복합체의 기본개념 및 발전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 (2002. 9.)

중국자료

鄭文翰 主編, 『軍事大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1993)
喬良·王湘穗, 『超限戰·對全球化時代戰爭與戰法的想定』 (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9)

일본자료

日本防衛大學校·防衛學研究所 編, 『軍事學入門』 (東京, かや書房, 2000)
日本防衛大學校安全保障學研究所 編, 『安全保障學入門』 (東京, 亞紀書房, 2001)
日本防衛研究會編, 『自衛隊の教育と訓練』 (東京 かや書房, 1996)
松井茂, 『世界軍事學講座』 (東京 新潮社, 2002)

서방자료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美專門軍事教育政策』 (육군교육사령부 지원부 자료지원처 번역자료, 2000)
존 하키트 저, 徐錫鳳·李在昊 공역, 『專門職業軍』 (서울 淵鏡文化社, 1996)
U.S. Marine Corps, Warfighting (New York Currency Doubleday, 1994)
B. H. Liddell Hart, Strategy (London. Faber & Faber Ltd, 1967)
Freedman, Lawrence, The Revolution in Strategic Affair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undley, Richard O.,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9)

United States Army Cadet Command Headquaters. (Web URL

<http://www-rotc.monroe.army.mil/>)

[부록] 평생교육법에 의한 군사학 전공별 세부교육과정표

1. 군사행정학 전공

군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진리탐구의 기본영역에서 북한군 연구, 전술학 입문, 군사 행정학, 지휘관리, 전투지휘학 등의 관련과목 연구를 통하여 군사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군사법, 예산운용, 사무 및 인력관리, 정신전력 등 관련과목 연구를 통하여 조직행정에 대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교육과정표(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34과목) (학점-강의-실습)

**전술학입문 (3-3-0) **전투지휘학 (3-3-0) **지휘관리학 (3-3-0) **북한군전술 (3-3-0) *정신전력개론 (3-3-0) *군사행정학 (3-3-0) 공보실무 (3-2-2) 국방계약 (3-3-0) 국방관리실무 (3-3-0) 국방세무회계 (3-3-0) 국방예산관리 (3-3-0) 국방자금관리론 (3-3-0) 국방재무 (3-3-0) 국방회계 (3-3-0) 국방회계정보시스템 (3-2-2) 군경호경비론 (3-3-0) 군고통관리론 (3-3-0) 군범죄수사학 (3-3-0) 군범죄예방 및 실무론 (3-3-0)	기록물관리 (3-3-0) 민주통일론 (3-3-0) 부관행정학 (3-3-0) 부대행사 (3-3-0) 상훈학 (3-3-0) 안전보장학개론 (3-3-0) 언론과 공보작전 (3-3-0) 언론과 공보행정 (3-3-0) 인사운영실무 I · II (3-3-0) 전쟁사 (3-3-0) 정보화관리 (3-2-2) 정훈교육론 (3-3-0) 정훈실무 (3-2-2) 조달획득 (3-3-0) 진중문화론 (3-3-0) 특수전투기술 (3-3-0) 현병작전론 I · II · III (3-3-0) 형사법개론 (3-3-0)
--	---

2. 군수관리학 전공

군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경제효과, 능률적인 군수지원 목표달성을 위한 탐구, 체험·관리의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본영역에서 지휘관리학, 전술학개론(병기·병참·수송)의 관련과목 연구로 군수분야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전술학입문, 지휘관 및 참모, 북한군전술 등 관련과목 탐구로 군사력 유지 및 생존성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35과목) (학점-강의-실습)	
<p>**전술학입문 (3-3-0) **전투지휘학 (3-3-0) **지휘관리학 (3-3-0) **북한군전술 (3-3-0) *지휘관 및 참모업무 (3-3-0) *전투병과전술학 (3-3-0) 궤도차량학 I · II (3-3-0) 급양학 I · II (3-3-0) 병기전술학 (3-3-0) 병참전술학 (3-3-0) 보급관리학 I · II (3-3-0) 보급근무학 I · II (3-3-0) 수로/항만학 (3-3-0) 수송근무학 (3-3-0) 수송운용학 (3-3-0) 수송전술학 (3-3-0)</p>	<p>시설보급학 I · II (3-3-0) 연료학 I · II (3-3-0) 운전정비실습 (3-1-4) 육로수송학 I · II (3-3-0) 이동관리학 I · II (3-3-0) 일반차량학 (3-3-0) 전쟁사 (3-3-0) 정비관리학 I · II (3-3-0) 철도수송학 (3-3-0) 총포기재학 (3-3-0) 탄약개론 (3-3-0) 탄약실무론 (3-3-0) 특수장비학 I · II (3-3-0) 특수전투기술 (3-3-0) 항공수송학 (3-3-0)</p>

3. 지상전학 전공

군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한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와, 체험·관리의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진

리탐구의 기본영역에서 북한군 전술, 전술학 입문, 지휘관 및 참모업무, 전투지휘학 등의 관련과목 연구로 지상전의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지휘관리학 및 정신전력 관련과목 탐구를 통하여 무형전력 운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6과목* / 전공선택 82과목) (학점-강의-실습)	
**전술학입문 (3-3-0) **전투지휘학 (3-3-0) **지휘관리학 (3-3-0) **북한군전술 (3-3-0) *정신전력개론 (3-3-0) *지휘관 및 참모업무 (3-3-0) 공병건설 및 환경론 I · II (3-3-0) 공병전술학 I · II (3-3-0) 공중항법학 (3-3-0) 관측학 (3-2-2) 교육훈련관리 (3-3-0) 군사정보종합론 I · II (3-3-0) 군사정보학개론 I · II (3-3-0) 군사정보학입문 I · II (3-3-0) 군항공기상학 (3-3-0) 군항공역학 (3-3-0) 기갑/기계화여단전술 (3-3-0) 기갑/기계화전술학 I · II (3-3-0) 기계화보병편제화기 (3-2-2) 기동지원 I · II (3-2-2) 다중통신학 (3-1-4) 대기동지원 I · II (3-2-2) 대침투작전 (3-3-0) 무선통신실습 I · II (3-2-2) 방공레이더및유도무기학 I · II (3-2-2) 방공전술학 I · II (3-3-0) 방공포술학 I · II (3-2-2) 보병대대 (3-3-0) 보병연대 (3-3-0)	보병전술학 I · II (3-3-0) 사격술학 (3-3-0) 사격지휘학 I · II (3-3-0) 생존지원 I · II (3-2-2) 유선통신실습 I · II (3-2-2) 일반공병지원 I · II (3-2-2) 장갑차정비 (3-2-2) 전쟁사 (3-3-0) 전차/기보대대전술 (3-3-0) 전차장비학 (3-3-0) 전차포술실습 (3-2-2) 전포학과 실습 I · II (3-2-2) 정보수집학개론 I · II (3-3-0) 정보통신실습 I · II (3-2-2) 지형정보학 I · II (3-3-0) 측지학과 실습 I · II (3-2-2) 통신전술실습 I · II (3-2-2/3-1-4) 특수전투기술 (3-3-0) 포병대대 (3-3-0) 포병장비관리 I · II (3-2-2) 포병전술학 I · II (3-3-0) 항공기정비학 (3-3-0) 항공기조종학 (3-3-0) 항공안전/교통관제학 I · II (3-3-0) 항공전술학 (3-3-0) 핵 및 방사능학 I · II (3-2-2) 화학 및 생물학 I · II (3-2-2) 화학장비학과 실습 I · II (3-2-2) 화학전술학 I · II (3-3-0)

Military Education and Degree at university-level by the Higher Education Act

Jin, Seok-Yong

In 2004 Daejeon University established a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by an agreement with the Korea Army. And more than three universities brought up the rear. This means that military studies is authorized as one of university majors by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department enables students not only to graduate with a degree of Military Studies but also to receive officer's commission in the Korea Army. All students incur seven-year military services by receiving four-year scholarships from the Army.

The graduates start out as Second Lieutenants and become eligible for promotion. This article deals with (i) how the major came to be offered, (ii) details of the curricula of some universities, (iii) two perspectives on the curriculum of Military Studies (One is education for a good man, the other for a good warrior); finally (iv) the issues under debate as Military Studies is authorized as a science, and the problems awaiting solution

Key Words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urriculum, Degree, Higher Education Act